

# 중국의 법정통역\*

黄持渊\*\*

## 차 례

- I. 도입
- II. 법정통역의 내용
- III. 법정통역에 대한 연구
- IV. 중국 법정통역의 현황
- V. 결어

## I. 도입

경제 글로벌화와 대외개방의 가속화로 중국의 여러 시장주체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외국과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진 만큼 분규로 인한 소송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과 관련된 소송을 섭외사건이라 부른다. 외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마카오 지역까지 관련된 사건을 섭외사건에 포함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과 왕래가 있지만 중국 대륙과는 다른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섭외사건의 수와 유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제 10회 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2006년 섭외사건은 총 2만 3,313건으로 전년대비 16.39% 증가하였다. 특히 홍콩 대만 마카오 지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학원 한중과 조교수, sarahuang@hanmail.net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6년 까지 중국 법원에서 종결된 지적재산권 민사 섭외사건은 모두 931건으로 연평균 48.2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1)</sup>

이에 따라 섭외사건에 대한 법정통역의 수요가 늘고 있다. 중국은 법정통역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제 240조에서 “인민법원이 민사 섭외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역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영역에서 대학에서 통번역을 가르치는 곳은 소수이고 커리큘럼 안에 법정통역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중국 교육부는 2006년 몇몇 대학에 통역 학부 설립을 허가하였고, 국무원 학위위원회도 통번역 석사학위 설립을 허가하여 북경대학 북경외대 등 15개 대학이 2007년부터 석사과정 신입생을 맞이하는 등 법정통역사에 대한 수요를 대비하고 있다.<sup>2)</sup>

본 문은 중국 법정통역에 관한 고찰이다. 한국에서 법정통역은 아직 생소한 영역이지만 유럽 등에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섭외사건 증가와 글로벌화의 진전이라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중국 사법시스템에서 법정통역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sup>3)</sup>

하지만 본 문은 중국 법정통역 현황을 전반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중국의 법정통역 자료가 드물고 내용도 법정통역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다수이고 사례도 지역 차원에서나 찾을 수 있어서 이다.

## II. 법정통역의 내용

법정통역이란 사건심리과정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지칭하거나 법정

1) 人民日報 2007년 4월 26일 기사

2) 北京考試報 2007년 7월 18일 기사.

3) 중국의 법원시스템에서 국가 재판 기관은 인민 법원이다. 사법 체계는 지방의 각 급 인민 법원, 전문 인민 법원, 최고 인민 법원으로 되어 있다. 각 급 인민 법원의 재판은 최고 인민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법률과정과 행위에 대한 통역을 지칭한다.<sup>4)</sup>

법정통역의 특징은 발화자의 말이 재판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통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역사는 소송참여자와 법관 변호사 중간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이 즉시 반응해야 한다. 언어의 이해와 조직, 내용전달 등을 한꺼번에 해야 하므로 통역사는 높은 수준의 법률에 기초한 분석종합능력이 필요하다. 발화자의 신분, 어투의 선택, 언어부호의 선택, 통역사의 통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

법률용어는 독특한 발음과 조성방식을 사용하고 장문과 복잡한 문장을 쓰고, 단어사용에 중첩과 군더더기가 있으며, 동의어가 병렬로 사용되는 등 특수한 문형이 나타나고, 대부분 이중 혹은 다중의 부정형식을 사용하고, 무인칭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sup>5)</sup>

이처럼 법률용어를 통역하는 법정통역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다. 통역수준의 높고 낮음, 통역 질의 좋고 나쁨, 통역 정확성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법정통역사는 전문적 기능과 높은 소양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법정심리의 모든 단계의 언어, 법관과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용하는 언어, 소송언어, 변론언어, 상관법률법규 등 광범위한 법률자료 및 법률언어와 어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정통역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sup>6)</sup> 우선 증인 통역으로, 통역사는 법관 변호사 배심원통역사가 해당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증인의 증언을 통역한다. 다음으로 피고 통역으로, 피고 변호사 옆에 앉아 피고와 그 변호사간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마지막 법률과정 통역으로, 변호사 증인 및 법관 간의 대화를 통역하여 해당언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피고에게 법률과정의 진행상황을 이해시킨다.

법정통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통역 방식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요약통역이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순차 통역은 발화자와 통역사가 동시에 말을 하지 못할 때 통역사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출발어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 통역사가 발화자의 생각과 정보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체

4) Mikkelson, H. Fundamental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cti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85.

5) Tiersma, Peter M. Legal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99, 51-69.

6) 郭晶英, 〈中外法庭通譯制度比較研究〉, 《法學雜誌》第5期, 2007年.

과정 진행에 간섭을 받는다.

둘째로 동시 통역이다. 발화자가 말하고 듣는 것을 동시에, 통역사도 발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입으로 발화자가 몇 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통역한다. 법정 안에서 통역사는 국제회의장에서처럼 특별한 설비나 공간이 없이 통역이 진행되므로 통역사는 많은 힘을 쏟아야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발화자가 통역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말하기라도 하면 통역사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순차통역처럼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동시통역은 통역과 진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로 요약 통역이다. 통역사가 화자의 말을 자세히 듣고 축약시켜 중점 내용을 통역한다. 통역사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는 만큼 통역사가 내용을 축약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통역사의 실시간 통역능력,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 등의 문제는 당사자가 공평한 심판의 기회를 받느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인 통역은 개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정통역은 다르다. 1차적인 모든 정보들이 조명되어 법적으로 실현되기를 요구 받는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78년 <법정통역사법안(Court Interpreters Acts)>에서 "법정통역사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한자도 틀리지 않고 출발어 정보를 통역해야 한다. 수식이나 출발어 정보를 생략하면 안되고 출발어의 문체나 문맥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국의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법정통역 제공의 근거가 되고 있다.<sup>7)</sup> 그러면 중국의 법정통역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 Ⅲ. 법정통역에 대한 연구

최근 국제적으로 법정 통역에 관한 연구가 증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중국에서도 법정 통역과 법률 번역에 관한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서 법정 통역과 법률 번역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법정통역은

7) 劉淑穎, 〈美國的法庭口譯〉, 《寧夏社會科學》第1期, 2006年.

법정에서 진행되는 통역을 말하고 법률 번역은 문서의 서면번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기능주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原芳蓮(2007) 등은 기능주의에서 법률번역 문제를 다루었다.<sup>8)</sup> 李德鳳와 胡牧(2005)은 최근 25년간 출간된 법률번역에 관한 연구의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간 법률 번역에 관한 글은 총 54편에 달하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sup>9)</sup> 杜璧玉(2003)은 대학 내에 법정 통역의 교과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sup>10)</sup>

법정통역은 법률언어학 연구에서의 한 파트이기도 하다. 杜金榜(2000)은 해외의 법률언어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통역 연구를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Berk Seligson은 법정통역사의 언어를 분석하여 사회언어학과 심리언어학적 방법으로 통역의 과정을 연구하였고, Story Whyte는 법률번역을 서면번역과 통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1)</sup> 법정통역사가 처한 현실을 연구한 사람은 Hale & Gibbons (1999)이다. 그는 법정의 현실과 법정이 처리하는 안건의 현실 중에서 통역사는 안건을 더 충실하게 구현한다고 하였다.<sup>12)</sup>

법 체계에 관해 중국은 스스로 사회주의법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등 대륙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대륙법계의 특징은 영미법계와 같은 집중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영미법은 대륙법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중요한 법 계통인데 법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취급방법이 대륙법과 판이하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중국에도 대륙법과 영미법이 융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龍

8) 原芳蓮, 〈功能翻譯理論在法律翻譯中的應用〉, 《科技信息》第27卷, 2007年.

9) 李德鳳、胡牧, 〈法律翻譯研究: 現狀與前瞻〉, 《中國科技翻譯》第19卷8期, 2006年.

10) 杜璧玉, 〈法庭翻譯課程設置初探〉, 《山東外語教學》第1期, 2003年.

11) 杜金榜, 〈從目前的研究看法律語言學科体系的构建〉, 《現代外語》第23卷1期, 2000年.

12) Hale & Gibbons. Varying realities: patterned changes in the interpreter's representation of Courtroom and external realities, Applied Linguistics, Vol.20, No.2, 1999, pp.203-220.

13) 대륙법은 영미법과 함께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중요한 법 계통이다.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 여러 나라의 법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영미법과 대비된다. 대륙법은 법의 각 부문에 관한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관습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宗智(1998)은 영미법계 특징인 집중성과 신속성이 중국 사법시스템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sup>14)</sup> 법률 번역에 관한 저술도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법원시스템도 이 방면의 개혁에 착수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 법정통역사의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번역의 연구분야는 이론, 법률 언어의 특징과 번역, 법률번역의 원칙, 법률번역 방법, 법률용어 번역 등 다양하지만 이러한 주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본문은 법정통역만을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법정통역과 관련된 법률 규정, 선발 인증, 운영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중국의 법정통역 현황

##### 1. 중국 법정통역에 관한 법률 규정

소송당사자의 지위는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양호한 언어표현 능력이나 공식 언어로 교류를 할 능력이 없을 때 심판과정에서 오해와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공평한 심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언어에서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중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중국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중국어와 신의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에서 법정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크게 소수민족·일국양제(一國兩制)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소수민족의 언어 평등이다. 소수민족이 상용하는 언어는 공식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이든 증인이든 법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소수민족 이중언어교육연구회의 丁文樓 회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 소수민족 중 민족 고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민족이 전체 소수민족 수의 71.8%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

14) 龍宗智, 〈試論我國刑事訴訟中的對抗制因素及其合理限度〉, 《江海學刊》第2期, 1998年.

국 민족 언어의 체계는 한장(漢藏), 알타이, 남아시아, 유라시아의 5개 언어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족과 만주족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 말고 50여 개가 넘는 소수 민족이 80여 개 상당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5)</sup> 아직까지 대다수 소수민족이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간직하고 있고 보통화(만다린)를 못 알아 듣던지 구사하지 못하는 뜻이다.

중국은 입법으로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권리를 보호하여 소송참가자가 법정에서 통역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 9조에서 “각 민족과 국민은 모두 자신의 민족언어문자로 진행되는 소송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 6조에서도 “각 민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소송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 공안기관은 해당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모르는 소송참가자에게 번역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제 11조도 법정통역의 입법 조문을 두고 있다.

둘째, 일국양제의 언어 평등이다. 홍콩과 마카오의 복귀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대륙의 사회주의법계, 마카오의 대륙법계, 홍콩의 영미법계라는 여러 가지 법체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가 장기간 자본주의 제도 및 기존 법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두 가지 법정언어로 입법 사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1국·2제·3개 법체계·4개 법지역’ 현상이라 부르고 있다.<sup>16)</sup>

<마카오 기본법>제 9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어 외에 포르투갈어도 입법과 사법업무의 공식언어로 삼고 있다. <홍콩인권법안조례>에 따르면 “어떤 소송당사자도 심리를 받을 때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소송내용을 들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변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언어 평등을 보장한다. 점점 더 많은 외국 국민들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공장설립·운송·관광·결혼 등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법률을 어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 후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하며 기타 성원국의 국민 기업 조직에게 자국과 동등한 소송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당사자가 중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15) 中广网 2005년 22일 기사([http://www.cnr.cn/news/t20051022\\_504118807.html](http://www.cnr.cn/news/t20051022_504118807.html))

16) 郭晶英, <庭審中法律平等的語言實現>, 《重慶科技學院學報》第4期, 2007年.

때 중국어 및 자신의 모국어간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제 8조에서 “민사소송 당사자는 평등한 소송권리를 갖는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당사자가 법률을 활용하는데 평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평등할 뿐 아니라, 외국인 당사자도 평등하다는 뜻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1998년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문제〉제 319조에서 “인민법원이 대외형사사건을 심판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외국국적의 피고인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외국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어문자를 알아서 번역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통역 불필요에 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 283조, 82조, 151조와 154조에 법정통역을 소송참가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2. 중국 법정통역사의 선발과 인증

중국의 통역업무 종사자는 대략 50만 명에나 달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현재까지 법정통역사라는 타이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인증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번역의 질적 관리를 규범화하고 질적 제고와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2003년 국가표준 〈번역서비스 규범 제 1부〉(GB/T 1936 3.1 2003)와 2005년 〈번역문의 질적 요구〉(GB/T 19682 2005)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통번역 서비스기관의 사전준비·번역·심사·편집·원고교정·번역품질의 감수·번역품질의 추적·책임·비밀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통역과 번역의 자격인증 시험도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격인증시험으로는 2003년부터 국가인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 통번역사 자격시험(翻譯專業資格考試 China Aptitude Test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CATTI)이 있다. 여기서 발급하는 〈전문 통번역사 자격인증서(中華人民共和國翻譯專業資格證書)〉는 공신력이 있으며 전문직 통번역사의 필수요건의 하나이다. 이 시험을 대비

하여 북경 상해 천진 시를 비롯한 각 성 46곳 기관에서 통번역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조건에 부합한 교육기관으로서 중국 외문국 통번역평가센터(中國外文局翻譯專業考評中心)와 협의를 맺고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7)</sup>

중앙 정부나 최고 인민법원의 자격인증시험은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정통역 자격인증시험의 사례로 청도 시의 예를 찾을 수 있다.<sup>18)</sup> 청도시 정법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도시 번역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통역사 자격인증 시험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통역시험과목은 한국어·영어·일어의 3가지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법정통역사를 뽑는 것이 신선하게 보인다. 하지만 청도 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일도 아니다.

시험과목은 법률상식, 법률외국어이다. 법률외국어 시험 안에 번역·통역·듣기 시험이 있다. 시험 자격조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법학전공자나 타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법학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법률상식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통역사 시험을 치루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청도시 번역센터에서 주관한다.

법정통역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인증서 소지자는 청도 시 법정시스템에서 외사 통번역 업무를 보게 된다.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0명의 법정통역사를 선발했는데 3년간 청도 시 섭외사건과 경제분류에서 약 20여 차례의 법정통역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청도 시 법정통역사 선발시험은 매년 1차례 실시되며 합격자에게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미 인증을 받은 법정통역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재평가시험을 실시한다.

### 3. 중국 법정통역의 운영

법정통역사의 운영도 지역별로 상황을 알 수 있다. 우선 사천성 성도시 중급인민 법원의 경우 <섭외 민사사건 번역업무 의견>들을 제정하였다. 이는 법정통역을 규범화 한 것으로 법원이 규정된 형식과 프로세스를 따라 전문적인 번역부서나 통역

17) 全國翻譯專業資格考試網 2007년 9월 12일([http://www.catti.net.cn/2007-09/12/content\\_75990.htm](http://www.catti.net.cn/2007-09/12/content_75990.htm))

18) 青島國際交流中心網 2007년 7월 26일(<http://www.qdicc.com/showfanyi.asp?id=140>)

사를 지정하여 증거나 벌칙 문서의 번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사천성 성도시 중급 인민법원은 해외 및 홍콩 마카오 관련 섭외사건을 모두 268건 심리하였고, 섭외사건의 전문 번역업무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sup>19)</sup>

홍콩·대만은 법정통역 운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홍콩의 경우 홍콩법원 정무처 법정어문팀에서 탄탄한 법정통역사 진영을 갖추고 있는 등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의 영향 때문으로 법정통역 체계가 잘 잡혀있다. 현재 법정통역의 임무를 맡은 신참 통역사는 통역업무를 하기 전 4 주 동안 법원 심사과정·법정상용어·기본법률지식·법정통역기술 등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대만의 사법원은 1995년 〈고등법원 및 분원의 계약 통역사명단과 일당 여행비 보수지급에 관하여〉을 발표하여 법원이 수화통역사·민남어·영어·일어·불어·독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계약통역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통역사의 자격인증·채직훈련·계약통역 일당·여행비 보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보통 법정통역사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 까. 만약 외국인 당사자가 법정심사에 참가하면서 법정통역을 요구했을 때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국인 당사자가 직접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통역비용을 스스로 내는 방법이다. 이때 당사자가 데리고 오는 통역사는 당사자와 똑 같은 신분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통역하는 사람을 스스로 데리고 왔을 경우 그 지위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역사인가 아니면 대리인에 더 적합한가 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정통역사의 지위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법원심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통역사라기 보다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통역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때 쌍방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추천된 통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다수 법원이 법정통역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나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을 통역사로 임의로 선임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정통역사의 법률지식과 법률언어, 전문적인 통역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통일된 선발 기준이 없다. 또 법률 해석이 필요

19) 陸文慧, 《法律翻譯: 從實踐出發》, 法律出版社 第1版, 2004年, 192쪽.

한지 증인의 증언을 통역할 때 문화차이를 해석할 것인지 피고가 이해하는 언어로 법률과정에 대해 해석해주어야 할지 등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없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정통역사의 통역비용은 외국인 당사자가 선지급하지만 소송 비용의 일부로서 재판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배분이 확정된다. 보통 시간당으로 보수를 받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전반적인 대우가 낮고 상응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섭외사건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법정심리도 길어서 통역사가 소송장·소송의견·법정심리기록·변호의견·판결문 등 법정심리와 관련된 문서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전에 통역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통역사가 순차통역이나 시역(Sight Translation)을 해야 함에도 시간에 쫓기고 법정이라는 압력 때문에 요약통역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sup>20)</sup>

#### 4. 중국 법정통역의 한계

법률언어의 특수성과 법정통역의 독특성 때문에 법정통역사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섭외사건 소송은 중국에서 통용되는 언어 즉 중국어를 심판언어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섭외사건에서 중국어를 모르는 소송 당사자가 있을 때 외국어와 중국어 간의 통역이 필요하다. 앞서 중국 법률은 원칙적으로 법정통역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법정통역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정통역사의 교육과 인증체계의 부족이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통역 학부와 석사학위 설립을 허가하였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수요와 비교할 때 통역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적다. 커리큘럼 안에 법정통역 과목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통일된 통역사 인증시험과 제도도 없어서 늘어나는 법정통역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증시험의 경우 법정통역과 관련된 공신력이 있는 자격인증시험이 없다. 다만, 청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서 법정통역 자격인증 시험이 존재한다. 이 역시 총 몇개의 지방정부나 법원에서 실시

20) 張新紅、李克興, 《法律文本和法律翻譯》,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2005年, 52쪽.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법정통역사의 선임과 임용이 임의적이다. 법정에서 통역사 임용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학이나 통역 에이전시를 통해 말이 소송당사자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거나 당사자를 수행해서 법정에 출두한 사람에게 통역을 맡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은 통역훈련이나 법률지식 법률언어지식이 부족하여 준비할 시간도 매우 부족할 것이다. 전문적인 통역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법률지식이나 법률용어를 모르고 통역수준도 천차만별 일 경우가 많다.

셋째 법정통역사의 선발 기준이나 도덕 규정이 부족하다. 법률지식과 법률언어, 전문적인 통역훈련을 받았는지 여부 등의 기준이나 법정통역에서 법률 해석이 필요한지 증인의 증언을 통역할 때 문화차이를 해석할 것인지 피고가 이해하는 언어로 법률과정에 대해 해석해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문장 맥락에서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있어서 통역사가 어느 선까지 상이한 법률문화 간의 차이를 매꾸어야 할 지 어렵다.

넷째 법정통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몇몇 법원은 법정통역사의 높은 수준의 고강도 업무를 중시하지 않고 통역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이 날로 융합되는 추세가 있는 상황에서 영미법 특징이 중국의 중국 법원 시스템에도 나타나게 되면 통역사의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심판과정에서 집중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미법 국가에서 모든 증거는 심판 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통역사는 심판과정의 어려움과 과중한 통역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증거는 순서에 따라 일련의 법관과 변호사가 만날 때 서면형식으로 제출되므로 업무가 집중적이지 않았다. 심판과정에서의 이러한 분산성은 법정통역사가 통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심판과정에서 집중성이 강화되면 중국의 법정통역사는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신속성 역시 강화될 것이다. 영미법의 심판은 소송 당사자가 모든 사건 사실을 한번에 법관과 배심원에게 제출하고 법관은 증거를 읽고 들은 다음 그 자리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만약 현재 중국에서 단계마다 법정에 문건을 내는 방식이 바뀐다면

법정심사 과정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법정심리 과정에서도 기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법관의 역할이 줄어들는 반면 변호사의 질문이나 이의 제기가 늘어나 법정통역사가 즉각적으로 통역하거나 시역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 IV. 결어

법정통역의 중요성은 사실의 발견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중국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 중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은 중국어와 자신의 모국어 간의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국 법률은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법정통역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정통역사의 실제 운영에서 아직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법정통역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법정통역의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인 법정통역사 시험이나 인증 체계가 없으므로 CATTI 자격인증서가 있는 통역사는 법정통역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방식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 최근 중국에서 법정통역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통역학부와 석사과정이 설립되었으므로 앞으로 법정통역사 양성에 점차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중국의 법정통역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 부족한 연구였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통역과 법률번역 분야로 확대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 참고문헌

- 陆文慧, 《法律翻译:从实践出发》,法律出版社,2004年。  
 张新红、李克兴,《法律文本和法律翻译》,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2005年。  
 原芳莲,〈功能翻译理论在法律翻译中的应用〉,《科技信息》第27卷,2007年。  
 李德凤、胡牧,〈法律翻译研究:现状与前瞻〉,《中国科技翻译》第19卷8期,2006年。

- 郭晶英,〈中外法庭通译制度比较研究〉,《法学杂志》第5期,2007年。
- 刘淑颖,〈美国的法庭口译〉,《宁夏社会科学》第1期,2006年。
- 郭晶英,〈庭审中法律平等的语言实现〉,《重庆科技学院学报》第4期,2007年。
- 杜碧玉,〈法庭翻译课程设置初探〉,《山东外语教学》第1期,2003年。
- 杜金榜,〈从目前的研究看法律语言学科体系的构建〉,《现代外语》第23卷1期,2000年。
- 龙宗智,〈试论我国刑事诉讼中的对抗制因素及其合理限度〉,《江海学刊》2期,1998年
- Mikkelsen, H. *Fundamental of Court Interpretation: Theory, Policy and Praticce*. Durham, NC: Carolina Academic Press, 1991.
- Tiersma, Peter M. *Legal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99.
- Hale & Gibbons. *Varying realities: patterned changes in the interpreter's representation of Courtroom and external realities*, *Applied Linguistics*, Vol. 20, No.2, 1999.
- 人民日报 2007년 4월 26일
- 北京考试报 2007년 7월 18일
- <http://www.catti.net.cn> (全国翻译专业资格考试网)
- <http://www.qdicc.com> (青岛国际交流中心网)
- <http://www.cnr.cn> (中广网)

<Abstract>

## Court Interpretation in China

Huang Ji-yeon

Foreigners with limited Chinese skills have rights to receive interpretation

service when they are engaging in a legal trial. Court interpretation plays an indispensable role in not only discovering facts but also in safeguarding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s. Even though, in principle, court interpretation is defined by the Chinese law and judicial interpretation, it leaves much to be desired when it comes to practice. It lacks detailed rules about the certification, training and testing of court interpreters.

While the demand for court interpreters is surging in china, the supply falls far short of the demand because working as a court interpreter is not an easy task that requires the interpreters to work in a unique working environment and to have in depth knowledge about the legal terms. Recently, however, translation has made great strides in the Chinese academic circle and universities are creating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departments and master's program for translation. So, college level education for court interpreters is expected to burgeon in China.

Furthermore, granting license for court interpretation to the interpreters with the CATTI certification can be a way of approaching the problem as there aren't any official national tests or certifications for becoming a court interpreter in China.

Key words Court interpretation, court interpreter, interpretation service, granting license

투 고 일 : 2008년 1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2월 15일